

세상을 아름답게, 평생건강 With You!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건강보장 리더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주요 Q&A

2020. 3. 17.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h·well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지속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코로나19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3차, 적용월 2020.3.)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안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1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하나요?

○ 네. 일부 가능합니다.

-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등(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배치 가산을 받는 인력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 시설장의 판단 하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3차)」(이하 ‘3차 지침’) 내용 중 ‘적극적 업무배제 근무시간 인정 특례’에 준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최대 15일)으로 인정하며,
- 재택근무를 하며 고시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상담 업무(유선 2회)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가산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판단으로 사회복지사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와 동의 및 유급을 전제로 가능하며, 재택 근무형태도 2020.3.에 한하여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 재택근무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전산등록 시 ‘예방적 격리’ 코드로 입력

2

입소형 기관(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종사자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나요?

○ 네. 일부 가능합니다.

- 시설장의 판단 하에 '3차 지침'에 따라 2020.3.에 한하여 적극적 업무배제된 종사자의 해당 월 근무시간을 유급을 전제로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사무국장, 사무원, 영양사 등 일부 종사자의 경우, 종사자 본인의 동의 및 유급을 전제로 '3차 지침' '적극적 업무배제 근무시간 인정 특례'(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일부 업무를 재택근무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직종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형태를 고려 시 재택근무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택근무 형태는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택근무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전산등록 시 '예방적 격리' 코드로 입력

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방문요양 사회복지사 포함)는 가족돌봄휴가 부여 시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나요?

○ 네. 유급으로 부여 시 인정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남녀고용평등법)하고 있으므로 해당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현행 세부사항 제12조의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범위'는 유급으로 전제로 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수유시간, 육아기 근로단축시간' 등을 부여 시 해당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2020.3.에 한하여 ‘3차 지침’의 ‘적극적 업무배제 근무시간 인정 특례’에 준하여 시설장이 유급을 전제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전산등록 시 ‘예방적 격리’ 코드로 입력

4

‘예방적 격리(예방적 코호트 격리)’와 ‘코호트 격리’는 무엇인가요?

- ‘예방적 격리(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목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의 근무형태를 조정하여 출입 횟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폐쇄 운영하는 예방적 격리를 뜻하며,
- ‘코호트 격리’는 감염 수급자·종사자가 발생한 시설 등을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으로 수급자·종사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전원 격리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폐쇄 운영하는 격리를 뜻합니다.

5

입소시설을 ‘예방적 격리(예방적 코호트 격리)’하는 경우, 업무배제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인정 가능한가요?

- 네. 일부 가능합니다.
- 시설장의 판단 하에 적극적 업무배제 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3차 지침’에 따라 2020.3.에 한하여 해당 월 근무시간으로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업무배제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전산등록 시 ‘예방적 격리’ 코드로 입력

- 또한, ‘예방적 격리’ 관련 지자체에 제출한 신청서 또는 자체적으로 ‘예방적 격리’ 시행 계획(종사자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정, 종사자 업무배제 상황, 사유 등 포함)을 내부결재 하여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적극적 업무배제 종사자의 해당 월 근무시간으로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미충족 될 시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됩니다.
- ※ 업무배제 종사자의 해당 월 근무시간으로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요건 충족 시에는 가산 적용도 가능함.

## 2.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

6

감염된 수급자로 인해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어 일부 종사자는 시설 내에서 24시간 상주하여 근무하고, 일부 종사자는 업무 배제(출근 불가)된 경우, 업무 배제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인정 가능하나요?

○ 네. 일부 가능합니다.

- ‘코호트 격리’로 업무배제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3차 지침’에 따라 해당 월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업무배제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전산등록 시 ‘코호트 격리’ 코드로 입력

7

감염된 수급자로 인해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 조치되어 일부 종사자는 출근하지 않고 업무 배제된 경우, 업무배제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코호트 격리’ 특례로 15일(1일 8시간) 등록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급여 비용 감산을 하나요?

- 아닙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기관은 해당 월에 대하여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코호트 격리’ 대상 통보서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코호트 격리’가 아닌 예방적 목적의 ‘예방적 격리’는 적극적 업무배제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최대 15일 인정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미충족 될 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됩니다.

8

‘예방적 격리’를 시행 중에 감염된 입소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배제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월 기준 근무시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예방적 격리’ 및 ‘코호트 격리’가 동일 월에 발생하는 경우 업무배제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 범위는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유별 중복하여 각각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예시) 예방적 격리 10일 실시 중에 감염자 발생으로 15일간 코호트 격리 시 계속 업무배제된 종사자는 해당 월 최대 15일(1일 8시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가능함.(각각 특례코드로 합산한 25일이 아닌 최대 15일 인정)

### 3.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인정 기준

9

외부강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3월에 총 16회를 제공한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이 가능한가요?

- 2020.3.에 한하여 외부인의 출입 최소화를 위해 외부 강사에 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일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 맞춤형 프로그램 일시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는 최대 가산점수를 0.2점만 산정하며, 총 16회를 제공하였더라도 가산점수를 0.4점이 아닌 0.2점으로 산정합니다.

### 4.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

10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로 시설장이 판단하여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프로그램 관리자)의 방문상담 업무를 유선으로 대체하여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에 대비하여 수급자·종사자 보호 조치로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존의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월 2회)으로 대체 수행하여도 2020.2.~3.에 한하여 업무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이 때, 유선상담 소요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인정하나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포함된 내용은 충실히 상담하여야 합니다.
- ※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시에도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지표 중 7(선별)’에서 상담시간에 관계없이 한시적(2020.2.~3.)으로 판단척도를 ‘우수’로 적용

- 또한, 유선상담 시에는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보호자) 서명은 생략 가능합니다.

1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있는 제공시간 중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유선 상담을 진행해야 하나요?

○ 급여제공 시간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 고시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월 2회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요양보호사 등) 모두 유선 상담 완료 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2

해당 월 중 수급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한 경우 유선상담을 수행하여야 하나요?

○ 네. 유선상담(월 2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월 중 다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유선상담(월 2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급여를 완전중단(재이용 의사없이 종료) 요청하여 계약해지한 경우는 유선상담을 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3

방문요양 수급자 25명인 기관입니다. 2020년 2월에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가산점수 1.8점을 산정 받지 못하였습니다. 3월에 방문요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방문요양기관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은 모든 수급자에 대해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가산이 산정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특례비용으로,
- 비용이 지급되는 전월(2020.2.)에 모든 수급자에게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아 직종별 1인당 가산점수의 100%가 산정되지 않은 기관(고시 제58조제2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3월에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 기관은 3월에 해당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고시 제58조에 따라 산출된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만 산정 가능합니다.

14

2020년 2월에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이 1.8점 산정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3월에 모든 수급자를 방문 또는 유선상담 하여야 하나 수급자 1명을 상담을 하지 못하여 방문(유선 포함)비율이 90% 이상으로 1.44점이 산정되었는데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방문요양기관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은 모든 수급자에 대해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가산이 산정된 기관에 대해 지급하는 특례비용으로,

- 해당 월(3월)에 모든 수급자에 대한 유선상담 등 업무 수행이 모두 이루어져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례 기관은 3월에 해당 지원금은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방문비율에 따라 산정된 1.44점(제58조제2항제2호및제3호에 따라 산출) 해당하는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만 산정 가능합니다.

15 2020.2.에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으로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가산’ (1.8점)을 받은 기관이었으나, 3월에는 방문요양 수급자가 13명으로 감소 시 해당 기관은 가산을 받지 못하나요?

○ 아닙니다. 조건부로 가산을 적용합니다.

- 2020년 2월에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 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가산(1.8점)을 적용받은 기관이
- 3월에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하로 감소 또는 1인당 급여 이용량 감소에 따라 3월 해당 가산금(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 배치 가산금)이 240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시 그 차액을 지급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2.에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1.8점)을 지급 받은 기관이 3월에 방문요양 수급자 수 감소 또는 급여 이용량 감소에 따라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가산금액 240만원 미만으로 산정될 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 법적으로 의무배치인력인 사회복지사만 적용되며, 그 외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는 적용되지 않음.

16 방문요양 수급자는 15명 미만이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해당 기관의 수급자를 모두 합하여 15인 이상에 해당하여 2020.2.에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1.2점)’을 받은 기관이 3월에 수급자 감소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의무배치 사회복지사 가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이 한시적 지원금은 법적으로 배치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2020.3.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 2020년 2월에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 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의무 배치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가산(1.8점)을 적용받은 기관이 3월에 해당 가산금(의무 배치 사회복지사 1인 배치 가산금)을 24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 따라서, 2020년 2월에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미만으로 사회복지사를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기관은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지원금은 전산개발 일정이 소요되므로, 청구 시기 등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5.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17

주·야간보호기관이 종사자도 배치하지 않고 휴업\*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이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을 전면 폐쇄 또는 휴업(기관 내 수급자·종사자 없음)한 경우에는 실제 급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미이용일 급여 비용 및 특례비용'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휴업 : 기관이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전혀 없어 종사자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휴원 : 긴급돌봄 등 일부 급여를 제공할 의사가 있어 종사자는 배치하였으나, 모든 수급자가 오지 않아 전체를 미이용일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당일 긴급돌봄 이용자만 있는 경우

- 다만, 이 경우 가산 또는 감액산정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고시 제4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산출 시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일정기간 실제 미운영한 경우 월 기준근무시간 산출식 : [해당월 중 실제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미운영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휴업이 아닌 긴급돌봄을 전제로 한 휴원 시 긴급돌봄이 있는 경우는 근무가능일수에 포함됨.

18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와 3차 내용 중 주야간보호기관의 ‘한시적 코로나 미이용일 특례비용’ (이하 ‘코로나 특례비용’)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2차 지침은 고시(제32조제3항)상의 2020년 2월에 한시적으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 + ‘코로나 특례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 추가 5일 ⇒ 월 최대 10일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 3차 지침은 정부의 휴원 권고(2020.3.9.~22.)를 이행 시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 + ‘코로나 특례비용’ 추가 10일 ⇒ 월 최대 15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2차 지침과 달리 3차 지침은 휴원 기간동안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라 한시적 코로나 특례비용을 차등(50~60%) 지급함.

19

주야간보호기관이 ‘코로나 특례비용’ 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2차 지침은 지자체의 권고 또는 감염우려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 시 사전에 반드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코로나 특례비용’ 을 5일간 산정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 3차 지침은 **2020.3.9.~22.**(2주간, 평일기준)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 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코로나 특례비용’ 을 10일까지 확대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휴원 안내, 긴급돌봄 수요조사 실시 여부, 그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 또한, 2차 및 3차 지침 동일하게 긴급돌봄 희망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수 인력(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은 배치되어야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합니다.

※ 예외 적용은 질의 30번의 ‘예방적 격리’ 요양시설 병설 주야간보호기관 사례 참고

20

주야간보호기관이 휴원으로 실제 긴급돌봄 희망자도 없어 필수 인력인 총 3명(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명, 그 외 직종 1명)만 배치하고 다른 직원은 업무배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특례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종사자의 근무시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 실제 긴급돌봄 이용자가 있는 휴원 일자는 종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계산 시 필요한 ‘근무가능일수’, 입소자 수 계산 시 필요한 ‘급여제공일수’에서 포함하되,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전혀 없이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또는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는 수급자만 있는 휴원 일자는 ‘근무가능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실제 근무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등에 필요하므로,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의 긴급돌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에 실제 근무시간을 모두 신고(전산등록)하여야 하며,
  - 또한, 휴원일에 일부 업무배제 된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3차 지침’(2020.3.에 한함)에 따라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특례를 공단에 전산 등록(‘예방적 격리’ 코드)하여야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1 3차 지침의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2020.2.29.까지 해당 주야간보호기관으로 3월의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일자가 1일이라도 있는 수급자 중 월 중 하루라도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만 해당됩니다.

※ 고시(제32조제3항)상의 ‘월 15일 이상 계약체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급여일정이 수시 변경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여 2020.3.에 적용하는 ‘코로나 특례비용’은 2020.3.31.까지  
급여계약통보서 상 급여일정이 등록된 날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  
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2 3차 지침의 ‘코로나 특례비용’ 적용기간과 인정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3차 지침이 적용되는 2020년 3월의 ‘코로나 특례비용’은 원칙적  
으로 2020.3.9.~22.(휴원권고기간)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 인정비용은 해당 일의 긴급돌봄 이용자 수가 정원의 30%이하  
(소수점 이하 반올림)인 경우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  
의 60%(공단이 전액 부담)를 산정하고,
  - 해당 일의 긴급돌봄 이용자 수가 정원의 30%초과(소수점 이하 반올림)  
할 경우는 2차 지침과 동일하게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를 산정합니다.

2차 지침에 따라 2020.3. 첫째주(3.2.~6.)에 긴급돌봄 수요 조사 후 휴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이 불가한가요?

- 원칙적으로 ‘코로나 특례비용’은 2020.3.9.~22.(휴원권고기간)에 한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차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 1) 2020.3. 1주차(3.2.~6.)만 긴급돌봄 수요조사 후 휴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코로나 특례비용’을 5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인정비용은 2차 지침에 따라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를 청구 가능하며,
  - 2) 2020.3. 1주차와 2주차(3.2.~13.) 2주간 긴급돌봄 수요조사 후 휴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코로나 특례비용’ 10일에 한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인정비용은 1주차는 2차 지침에 따라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 2주차는 3차 지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요건(30%이하) 충족 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공단이 전액 부담)를 청구 가능하며,
  - 3) 2020.3. 1주 ~ 3주차까지 3주간(3.2.~22.) 긴급돌봄 수요조사 후 휴원 조치를 한 경우에 인정비용은 1주차는 고시(제32조제3항)상의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50%)을 청구하고, 2주와 3주차는 3차 지침에 따라 ‘코로나 특례비용’을 10일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요건(30%이하) 충족 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공단이 전액 부담)를 청구 가능합니다.

※ ‘코로나 특례비용 60%’는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요건 미충족(30% 초과) 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본인부담금 제외)를 적용

24

3차 지침에 따른 휴원 안내를 수급자에게 하지 않고 긴급돌봄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운영 시 미이용자에 대한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이 가능하나요?

- 3차 지침 상의 ‘코로나 특례비용’은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휴원 조치를 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의 피해 최소화 목적으로 손실 보상을 지원하는 특례입니다.
- 따라서, 주야간보호기관이 ‘코로나 특례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에게 휴원 안내를 하고, 긴급돌봄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 ※ 휴원 안내, 긴급돌봄 수요조사 실시 여부, 그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 2020.3.에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에게 휴원 안내를 하지 않고 긴급돌봄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운영 시에는
- 고시(제32조제3항)상의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3.9.~22.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5일, 50%)과 ‘코로나 특례비용’ (3.2.~3.20.기간 동안 5일, 50%)만을 인정하여 최대 10일 청구가 가능합니다.

25

2020.3.22. 이후 급여일정이 등록된 미이용자도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이 가능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의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0.3.22.이후에는 일체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이 불가하므로,
- 고시(제32조제3항)상의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50%)만 산정 할 수 있습니다.

26

한시적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한 수급자가 해당 월에 고시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3월은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권고기간에 ‘코로나 특례비용’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므로 해당 기간(2020.3.9.~22.)에는 고시(제32조제3항)상의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산정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그 외 다른 일자(3.2.~6, 23~31.)에 미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고시(제32조제3항)상의 기존 미이용일 급여비용(50%) 5일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7

인지지원등급도 주·야간보호기관 ‘한시적 코로나 미이용일 특례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20.2.29.까지 3월 급여계약이 적기 통보된 인지지원 등급자 중 월 하루라도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였다면 ‘3차 지침’에 따라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 인지지원 등급자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해당기관이 3.9.~22.일까지 휴원 권고 이행 시 해당기간(평일 기준) 동안 최대 10일 산정 가능하며, 정상 운영 하는 경우에는 미이용한 일자에 대해 3.2.~20.기간 동안(평일 기준) 최대 5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이 2020.3.2.~4.에 휴원, 3.16.~19.까지 휴원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자별 ‘코로나 특례비용’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 28p 붙임 참고

- 3차 지침이 적용되는 2020년 3월의 ‘코로나 특례비용’은 원칙적으로 기관별 휴원 권고 기간(2020.3.9.~22.)에 휴원 이행을 전제로 최대 10일을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2차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 2020.3. 1주차(3.2~3.6)에 휴원한 경우에도 2차 지침에 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을 해당 일자(5일간, 50%, 본인부담금 제외)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휴원하지 않은 정상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2020.3.2.~20.에 한하여 수급자별 ‘코로나 특례비용’을 최대 5일간을 기본 인정하도록 하였으므로,
  - 기관별 휴원 기간에 긴급돌봄 이용자로 ‘코로나 특례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수급자는 2020.3.2. ~ 20. 기간 중 해당 기관이 정상 운영(미휴원)한 기간 동안에 실제 미이용한 일자에 대해 해당 수급자별 최대 5일간은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별 사례 1 ... 일자별 기관 휴원 여부와 수급자 이용현황

| 일자             | 휴원여부       | A 수급자  | 급여비용 | 코로나 특례비용          |
|----------------|------------|--------|------|-------------------|
| ① 3.2.~4(3일)   | 휴원         | 3일 미이용 | x    | 3일 50% (본인부담금 제외) |
| ② 3.16.~19(4일) | 휴원         | 4일 미이용 | x    | 4일 60% (요건 충족 시)  |
| ③ 3.11.~13(3일) | <u>미휴원</u> | 3일 미이용 | x    | 3일 모두 인정불가        |

- A 수급자) ① 3.2.~4. (3일)은 정부의 휴원권고 기간은 아니나, 기관이 이미 휴원 하였으므로, 2차 지침상의 ‘코로나 특례비용’50%(본인부담금 제외) 산정,
- ② 3.16.~19.(4일)은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하는 휴원권고 기간이므로, 4일에 대하여 ‘코로나 특례비용’ 60% (요건 미충족 시 50%) 산정
- ⇒ A 수급자는 휴원기간 동안 ‘코로나 특례비용’을 이미 7일 산정하였으므로
- ③ 미휴원한 3.11.~13.(3일)은 ‘코로나 특례비용’을 추가 산정 불가(사유: 수급자별 월 최대 기본 인정하는 ‘코로나 특례비용’ 5일을 소진하였음)

△ 수급자별 사례 2 ... 일자별 기관 휴원 여부와 수급자 이용현황

| 일자             | 휴원여부 | B 수급자            | 급여비용     | 코로나 특례비용          |
|----------------|------|------------------|----------|-------------------|
| ① 3.2.~4(3일)   | 휴원   | 3일 긴급돌봄 이용       | 3일간 100% | x                 |
| ② 3.16.~19(4일) | 휴원   | 3.16~18. 3일 미이용  | x        | 3일 60% (요건 충족 시)  |
|                |      | 3.19. 1일 긴급돌봄 이용 | 1일간 100% | x                 |
| ③ 3.11.~13(3일) | 미휴원  | 3일 미이용           | x        | 2일 50% (본인부담금 제외) |

- B 수급자) ① 3.2.~4. (3일)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으므로, 급여비용을 100% 산정  
 ② 3.16.~19.(4일)은 ‘코로나 특례비용’산정하는 휴원권고 기간이므로, 수급자가 미이용한 3일(3.16.~18.)에 대해‘코로나 특례비용’60%(요건 미충족 시 50%) 산정, 3.19. (1일)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으므로, 급여비용을 100% 산정  
 ⇨ B 수급자는 휴원기간 동안 ‘코로나 특례비용’을 총 3일 산정하였으므로 정상운영 시에도 수급자별로 청구 가능한 5일의 범위를 고려하여  
 ③ 3.11.~13.(3일) 중 2일간 ‘코로나 특례비용’을 추가로 산정 가능

△ 수급자별 사례 3 ... 일자별 기관 휴원 여부와 수급자 이용현황

| 일자             | 휴원여부 | C 수급자     | 급여비용     | 코로나 특례비용          |
|----------------|------|-----------|----------|-------------------|
| ① 3.2.~4(3일)   | 휴원   | 3일 긴급돌봄이용 | 3일간 100% | x                 |
| ② 3.16.~19(4일) | 휴원   | 4일 긴급돌봄이용 | 4일간 100% | x                 |
| ③ 3. 9.~13(5일) | 미휴원  | 5일 미이용    | x        | 5일 50% (본인부담금 제외) |

- C 수급자) ①, ② 휴원 기간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하였으므로, 급여비용을 100% 산정하되, 3.9.~13.(5일)에 대하여‘코로나 특례비용’50%(본인부담금 제외)를 산정  
 ⇨ C 수급자는 휴원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이용하여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정상운영 시에도 수급자별로 청구 가능한 5일의 범위를 고려하여 ③ 3.9.~13.(5일) 중 미이용한 일자 최대 5일간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 가능

29

기존 고시 상 미이용일 급여비용이 아닌 ‘코로나 특례비용’도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 ‘코로나 특례비용’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손실에 대한 비용 보상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하여 특례로
- 이 특례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수급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우므로, 본인부담금은 수납이 불가할 뿐 아니라 수급자의 월 한도액에서도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 특례비용 50%’는 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고, 본인부담금도 수납할 수 없으나, 3차 지침상의 ‘코로나 특례비용 60%’는 공단이 전액 부담함.

30

장기요양 입소시설과 병설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이 ‘예방적 격리’ 중(2020.3.9.~20.)으로 일부 시설을 병설 이용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긴급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전면 휴원 하는 경우에도 한시적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휴원(2020.3.9.~22.) 시 긴급돌봄을 전제로 ‘코로나 특례비용 (10일간, 60(50)%)’ 인정이 가능하나, 병설 입소시설이 ‘예방적 격리’ 중인 경우는 ‘예방적 격리’ 취지를 고려하여 긴급돌봄을 하지 않고 전면 휴원 시에도 한시적 ‘코로나 특례비용’을 인정합니다.
- 다만, 이 경우 긴급돌봄 상황에 대비하여 필수 인력은 배치하여야 하므로 시설과 겸직인력을 우선 배치하되, ‘예방적 격리’로

요양보호사 등 배치에 불가피한 경우 ‘3차 지침’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의 해당 월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최대 15일 범위 내에서 ‘예방적 격리 코드’로 전산 입력 시 배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1

장기요양 입소시설과 병설 운영하는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이 ‘예방적 격리’ 중(2020.3.9.~20.)으로 일부 시설을 병설 이용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긴급돌봄을 숙박형태로 제공하여도 되나요?

- 주야간보호기관은 숙박운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운영되는 재가시설이므로, 숙박은 허용이 불가합니다.

## 6. 5등급 수급자 일반 방문요양 한시적 허용

32

3월에 주·야간보호 급여를 계약하지 않고 이용도 하지 않은 5등급 수급자도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3차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0.3.(급여제공 월)에 한해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1일 1회 ‘180분 이상’ 급여 범위 안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 또한,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한시적으로 2020.3.(급여제공 월)에 한해 일반 방문요양을 1일 1회 60분 또는 90분 제공도 가능합니다.

## 7.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에 대한 특례

33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리자가 2020.2.에 퇴사한 주야간보호기관입니다. 신규 프로그램관리자가 채용되지 않는 상황인데, 2020.3. 부터는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예외적으로 2020.3.~6.까지 4개월간 제공 가능합니다.

- 2020.2. 에는 고시 제32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 근로자의날, 토요일 제외)까지는 프로그램관리자에 의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3차 지침'에 따라 신규 지정 기관 및 기존 개설 기관 모두 2020.3.~6. 기간 동안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8. 월 한도액 추가산정 인정기준

34

기관의 휴업 또는 수급자의 감염우려로 등원을 거부하여 주·야간보호급여를 15일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이 가능 하나요?

○ 네.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미이용일 5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월 한도액 50% 추가 산정이 가능하나, 수급자가 월 15일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 추가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9.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35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가 2020.1.에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60,000원(근속기간 58개월) 받았으나, 2월에는 수급자가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월 중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 2월과 3월은 장기근속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나,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해당 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이 ‘20년 1월(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 받은 경우,
  - 해당 장기요양요원이 2020년 2월과 3월에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30분 이상 ~ 60시간 미만) 시 ‘20년 1월(급여제공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다만, 2, 3월의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은 특례로 지급하나, 장기근속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해당 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2월, 3월에 해당요양보호사가 30분 이상 서비스를 1회 제공하였다면 1월 기준의 장기근속장려금을 60,000원

산정할 수 있으나, 추후 4월의 '근무기간 산정' 은 2월, 3월은 제외한 59개월로 산출하여 4월의 장기근속장려금은 60,000원을 산정하게 됩니다.

※ 관련 지원금은 전산개발 일정이 소요되므로, 청구 시기 등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10. 특별관리지역 등(대구·경북) 소재 종사자 퇴직에 따른 특별 지침

36 경북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감염우려 등으로 신규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이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 '3차 지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대구·경북)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종사자가 퇴사하고 신규 종사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 퇴사 종사자의 6개월 상근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은 특별관리지역 해제된 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까지 근무인원 1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 같은 기간 동안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직원은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되므로, 퇴사특례 적용 해당 직원을 제외하고도 해당 직종에 추가배치인력이 있는 경우는 가산 요건 충족 시에 해당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적용됩니다.

## 11.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37 입소시설의 수급자가 감염 의심자로 분류되어 해당 수급자가 타장소(장기요양기관 외)로 격리된 경우 수급자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격리기간 10일 이내이면 격리기간만큼 외박수가 산정이 가능하고 격리기간이 10일 이상이면 1회 최대 15일 외박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8 입소시설의 수급자 전원이 시설외의 장소에 격리된(종사자 없음)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격리기간 일수에 따라 외박수를 산정하되, 1회 최대 15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39 입소시설의 수급자 전원과 종사자가 시설외의 장소에 격리된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득이하게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기관 외 타 장소에 격리되어 해당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1일당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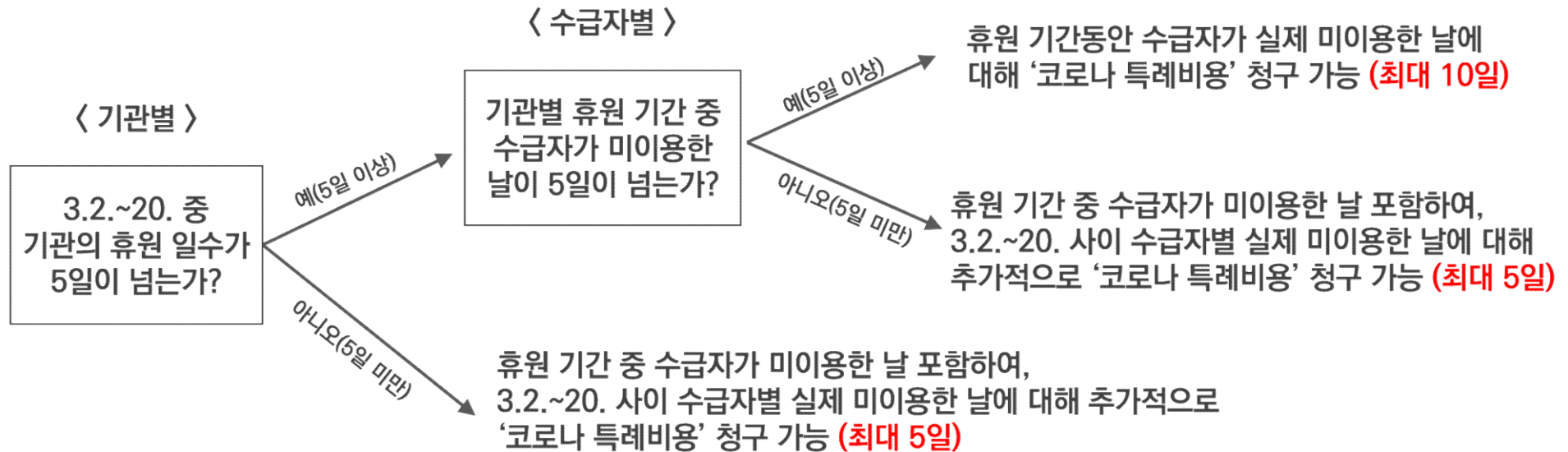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이 2020.3.1.자로 종료되는 수급자가 있으나, 코로나 감염우려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꺼려할 시 방문간호를 중단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이 2020.3.1.이후 종료된 경우 2020.4.30.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인정합니다.
- 다만, 2020.2.29.이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된 지시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2020.3.1.이후 종료된 지시서는 종료일부터 2개월간이 아닌 종료된 일자부터 2020.4.30.까지만 연장됩니다.

## 한시적 지침 3차(적용월 2020.3.)에 따른 수급자별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기준



※ 원칙적으로는 2020.3.9.~20.까지 ‘코로나 특례비용’을 산정하나, 2차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주·야간보호기관이 3월 1주차(3.2~6.)에 휴원 시에도 산정(50%)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3.23~31. 산정 불가



※ 3.9~20.내의 휴원기간 중 조건\* 충족시, 이용예정금액의 60%(전액공단부담)  
 ※ 3.9~20.내의 휴원기간 중 조건\* 미 충족 또는 정상 운영한 기간 내, 이용예정금액의 50%(본인부담금제외)  
 \* 조건 : 휴원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미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